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도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4.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1일(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6. 식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7. 알코올 음료 제조 시설(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맥아 및 맥주 제조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9.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가습·건조 또는 풀칠 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0. 방적 및 가공사 제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洗毛)·부잠(副蠶) 공정을

조시설	포함하는 시설
11. 식물 직조 및 식물 제품 제조시설	용적 합계가 1m ³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2. 섬유 염색 및 가공 시설	용적 합계가 5m ³ 이상인 세모·표백·정련(精練: 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함)·자숙·염색·다림질·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3.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m ³ 이상인 원피(原皮)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석회처리,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m ³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석회처리, 탈모, 탈회(脫灰),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5.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제조시설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m ³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m ³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m ³ 이상인 함침(含浸)·증해(蒸解)·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8. 인쇄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m ²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시설
19.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0. 기초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제조시설	질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2. 무기안료·합성염료·유연제 제조 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배출시설 중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또는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2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 ³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6.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7.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m ³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

	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8.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9.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가열, 건조, 선별, 혼합, 용융 또는 용해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1. 1차 철강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차 철강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2.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3.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5m ³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m ³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 ³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처리능력이 시간당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주물사처리 공정(코어제조 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3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混鍊)·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6.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

	<p>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p> <p>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시설 및 공공처리시설</p>
3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	<p>「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 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廢耐火物)·폐유리 등 무기성 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 시설은 제외한다.</p>
40. 그 밖의 시설	<p>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p>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 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